

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7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1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서천호 · 김용태
김태규 · 김위상 · 임이자
박성훈 · 김예지 · 성일중
나경원 · 김기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,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,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되었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

하려는 것임(안 제25조).

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 제목 중 “지방이전 및 혁신도시”를 “지방이전과 혁신도시 및 인구감소지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“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”를 “인구감소지역으로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(이하 “신설 공공기관”이라 한다)의”를 “신설 공공기관의”로 한다.

-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(이하 “신설 공공기관”이라 한다)의 입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5조(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) ① ~ ④ (생략)	제25조(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(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)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	-----인구감소지역으로의----- ----- -----
<신설>	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(이하 “신설 공공기관”이라 한다)의 입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(이하	⑦ 신설 공공기관의----- -----

<u>“신설 공공기관”이라 한다)의</u>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, 제 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⑦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---	---